

# 보건의료정보 관련 동일과목 인정심사 관련 질의 답변서

<'21.8.20. 의료자원정책과>

## □ 질의 내용

-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[별표1] 비고 '위 표의 과목명과 같지 않아도 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위 표의 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목을 위 표의 과목으로 본다' 규정 관련,
  - [별표1]의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 명칭이지만 'Ⅰ,Ⅱ', '1,2', '상,하' 등을 붙여 다학기에 걸쳐 교육할 경우, 상기 규정에 따라 동일과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지

## □ 검토 내용

-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에 따라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[별표1]에 따른 보건의료정보 관련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.
  - 다만, 과목명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위 표의 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목을 동일과목으로 인정되어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
- 교과목 명칭이 동일하더라도, 'Ⅰ,Ⅱ', '1,2', '상,하' 등을 붙여 다학기에 걸쳐 교육할 경우, 해당 교과목의 학습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,
  - \* 다학기 과정을 전부 이수해야 학습목표가 달성되는 경우와, 기본 학습목표 달성을 위한 교과목과 심화 교육을 위한 교과목 운영하는 경우 등
  - 다학기 과목 모두의 내용을 심사 후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아울러, 학생이 국가시험 응시를 위해 이수증명서를 제출할 때 포함되는 과목은 귀 기관의 인정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.